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9월 14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경제국장 한만석)

- 가. 제안이유
  -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4조)
- 인용조문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(안 제1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해 설치·운영중인 청년미래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(2028년 12월 31일까지)하고,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지방재정계획 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